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동주택 또는 주차장 등에서 주차·통행 방해
행위 제한〉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95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제220269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공동주택 또는 주차장 등에서 주차·통행 방해 행위 제한 (안 제26조)	2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53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9.
3. 회 부 일 : 2024. 8.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방해 행위를 단속·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강제 처리 요건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 처리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실제

처리에 착수하는 것이 늦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Ⅲ. 검토의견

1. 공동주택 또는 주차장 등에서 주차·통행 방해 행위 제한(안 제26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 ----- ----- ----- -----.
1. 자동차를 <u>일정한 장소</u> 에 고정시켜 <u>운행</u>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1. ----- <u>일정한 장소(공중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를 포함한다)</u> ----- <u>교통을 방해하거나 운행</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u>일정한 곳으로</u>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② ----- ----- -----지체 없이 일 <u>정한 곳으로</u>----- -----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6조¹⁾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를 견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각·폐차하는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런데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른 강제 처리 요건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6조는 도로변 또는 공터 등 일정한 장소에서 장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2) 금지사항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의3. (생략)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 28. (생략)

간 차량을 고정시켜 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숙박에 사용하는 등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차위반 등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³⁾에 따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무단 점거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할 때, 「자동차관리법」에 개정안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도로변 또는 공터 등 일정한 장소에 차량을 고정시켜 광고물 부착 홍보(상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숙박에 사용하는 등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3)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개정안은 공동주택 및 주차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종전의 입법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차량 운행 목적이 아닌 상태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강제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공동주택 또는 주차장에서 분쟁으로 인한 부분은 장기 방치자동차의 처리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또는 주차장과 관련된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법률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음.('24.7.10. 시행4))

문 의 처
02)6788-5582

4)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